##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

발의연월일: 2024. 6. 3.

발 의 자:이수진·송옥주·박해철

민형배 · 강준현 · 문대림

신정훈 • 복기왕 • 전용기

김승원·박 정·허 영

노종면 · 김문수 · 문진석

한민수 · 송재봉 · 최민희

이원택 • 백승아 • 서영교

이병진・황정아・문금주

정일영・김 윤・김남근

허종식 · 조인철 · 염태영

김태년 · 권향엽 · 장종태

안호영 • 박홍근 • 박홍배

정진욱 • 이상식 • 김 현

이재강 • 부승찬 의원

(41일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 수의 증가로 인해 간병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. 이와 더불어 사적 간병비용의 경우 1일 약 15만원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'간병'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. 생활이 어

려운 환자가 간병이 필요한 경우 환자와 환자 가족의 가계 및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.

이에 의료급여의 범위에 '간병'을 추가하여 국가가 의료급여 수급권 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되, 재정 부담 증가 및 의학적 필요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의료급여기관 중 요양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추후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도 간병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하여,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7조제1항제8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간병

## 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요양병원 이외의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7조(의료급여의 내용 등) ① 이	제7조(의료급여의 내용 등) ①		
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ㆍ			
부상・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			
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			
다.		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<u>8. 간병</u>	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		